15.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○ 발 의 자 : 도재준 의원, 김의식 의원, 신원섭 의원, 이재화 의원

조재구 의원, 최옥자 의원, 최재훈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○ 상정일자 :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문화복지위원회(2017년 11월 22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재준 의원)

□ 제안이유

○ 법인과 단체의 전문체육 진흥 활동에 대해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(실업팀)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마련

□ 주요내용

- 전문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20조 제1항)
-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사업에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명시하여 직장 운동경기 부(실업팀) 운영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20조 제2항)
-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문호)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체육회 및 법인·단체에서 실업팀을 창단·운영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근 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조례 개정을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철저한 검토	앞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겠음.
를 거쳐 미리 하시기 바람	효으로 경기 협상에 롯계 사전에 그대를 계정하셨다.

- 5. 토론요지
 - O 없 음
- 6. 수정안 요지
 - O 없 음
- 7. 심사결과
 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
 -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음.